

직원인사위원회규정

(제정 1989. 4. 6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직원인사규정 제3장에 따라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직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인사위원회는 총무처장, 총무지원실장, 노조지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총장이 지명하는 4명 이내의 6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되며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 부재시에는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5조(기능)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직원의 신규채용과 승진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
2. 실(팀)장급 이상의 전보 제청에 관한 사항
3. 직원의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보고)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의록)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참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)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둘 수 있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비밀엄수의무) 인사위원은 회의내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